



# 양계안정법

본법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계협회중진들이 의견을 제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은 늦은감은 있으나 딱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뜻밖아리 생산자 우생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여되었기에 협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배우고 느낀것을 제시코저 합니다.

## 1. 법제정의 필요성.

양계산업은 농가부업 및 전업양계를 막론하고 임의로 생산할수 있고 단기간에 양산할수있는 특성때문에 누구나 생산에 참여하여 일시에 흥하기도 하고 일시에 망하기도 하는 기복과 변화 많은 업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장기투자하여 발전시키고저 하나 불안정한 요소때문에 법의 보호 없이는 성공시키기 어려운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2. 통계자료 없는 허점.

1976년도 축산물처리법에 의한 농수산부 7개지역고시로 도계유통문제점 발생당시 생산자대표로 국회농수산분과, 농수산부, 공화당정책 연구실, 농수산담당실, 양계협회등 두루 방문할 기회가 있어 방문한 결과 가는곳마다 정확한 생산물 및 생산자 통계자료가 없다는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한심한 생각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과, 입법, 지도, 계획, 정보전달을 해야할 곳에 믿을 수 있는 통계가 없었다는데는 경악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현재도 1976년도와 다름없는 상태의 무통계속에서 생산자의 흥망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었다는것을 지적 해드립니다. 양계협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1,000명 전후에 불과하고 실지 미등록된 회원수는 등록 가입 회원보다 50배가 된다고 보면 과장이라고만 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례를 들면 필자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70명 생산자중에서 유일하게 필자 혼자만 협회회원 으로 존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굳이 회비를 지출하고 회원이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생산 판매와 운영이 가능하다는데 있기 때문인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속에 우리 양계협회의 통계는 상부에 보고되는 추상적인 수치인고로, 정책면에 올바른 판단, 올바른 계획이 수립된다고 누가 믿어주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료 및 물량의 과잉 또는 부족으로 정부의 실패작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박 병 희  
(본회 육계분과위원장)

이 속출하고 생산자의도산이따르고 생산자 도산후에오는 물량 품귀에서 오는 가격폭등 중간상인에 의한 폭리 수단으로 소비자의 피해 등 헤아릴 수 없는 불합리점이 발생하는 현실을 보아 우리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는 법의 제정으로 합리적인 안정된 방향의 법을 원하는 바입니다. 혹자는 법의 제정으로 오는 피해의 식속에 반대론자도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문제, 민주자유경제론, 법의 탄생에서 오는 자승자박론 등이 있으나 법제정의 신중성과 운영의 묘를 다해 우리모두가 피해를 보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점을 노파심에서 첨언하는 바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인 미국 일본 호주에서는 『부로일러보드』(broiler-board) 『에그보드』(egg board) 『부로일러 카운슬』(broiler council) 등의 제도적 운영으로 우리와 같은 실패사유는 사전에 방지되고 있으며 잘 운영된다는 현실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 3. 안정기금의 필요성.

우리는 축산분야에서 사료소비는 타축종보다 많이 소비하고 있으면서 행정당국의 지원 및 보조는 하위에 속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체의 힘으로 안정기금조성을 하는데는 수입사료분야, 수출입 양계산물, 뉴캐슬방역약품, 조생후 등에 부과하여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두고 방역사업, 소비촉진사업 피해생산자의 재기를 위한 저리용자 또는 보조사업, 기술개발, 유통수단인 비축사업 전국지역 별 판매장운영, 도계장운영등을 위한 수단에 법의 촛점을 맞춰 제정한다면 우리 양계인 선원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양계안정 관리법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